

# SmartWhistle

## 윤리경영 Newsletter 2018년 9월호

### 1. 최근 동향 및 소식

- 브라질, 옥중의 룰라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지지도 1위
- 중국 전 증감회 부주석 야오강, 부패혐의로 18년 징역형
- 팍팍해진 윤리규정에 제약업계 '어쩌나'
- 유엔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위한 'STS&P 전시회' 개최

###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마쓰시타전기] 신행동기준

### 3. 청렴 위반 사례

- 배우자의 회사에 최고점 부여 후 공사업체 선정
- 외부 장소에서 계약체결 직전 직무관련자와 비공개 면담

### 4. 지식마당

-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

### 5. Quiz

###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 최근 동향 및 소식

### 1. 브라질, 옥중의 룰라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지지도 1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오는 10월에 있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될 경우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MDA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은 지지율 37.3%를 얻어 지난 5월 조사했을 때 기록(32.4%)보다 상승했다. 그 뒤로 극우 성향의 사회자유당(PSL)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18.3%를 얻어 쫓고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한 자리 수를 기록했다. 지속가능네트워크(Rede) 소속의 마리나 실바 후보는 5.6%, 사회민주당(PSDB)의 제랄도 알키민 후보는 4.9%를 얻는데 그쳤다.

룰라 전 대통령은 브라질 최초의 노동자 계급 출신 대통령으로 수백 만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정책을 실시했으나 지난 4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번 브라질 대선에서는 13명의 후보가 등록함으로써 지난 1989년 대선(22명) 이후 최대 규모의 선거가 될 전망이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7bb866e4b018b93e9715f3](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7bb866e4b018b93e9715f3)

### 2. 중국 전 증감회 부주석 야오강, 부패혐의로 18년 징역형



지난 2015년 금융 부문에 대한 반부패 단속으로 낙마한 야오강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부주석에게 징역 18년형이 내려졌다.

28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허베이성 한단 시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야오 전 부주석의 수뢰, 내부자거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형과 1100만 위안(약 17억 7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또 그가 취득한 불법 재산 등이 전액 회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야오강이 2006~2015년 기간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돈과 선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직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를 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가까운 친척을 통해 받은 재물이 6961만 위안에 달하고, 특히 2007년 1~4월 내부자거래를 통해 210만 위안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수뢰액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28\\_0000429750&cID=10101&pID=101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28_0000429750&cID=10101&pID=10100)

## 최근 동향 및 소식

### 3. 팍팍해진 윤리규정에 제약업계 '어쩌나'

다국적 제약사들이 윤리 규정을 강화한 것은 세계 제약협회(IFPMA)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IFPMA는 내년 1월1일부터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판촉물을 비롯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물품을 금지했다. 축의금, 부조금 등 경조사비나 사회적 관례에 따른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 활동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IFPMA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들이 학술, 교육행사나 제품 설명회에서 5만원 이하 기념품 또는 1만원 이하 판촉물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IFPMA 규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부터 제약사들이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원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다 부정청탁금지법과 자체 윤리 규정이 있어서다. 제약 영업담당자들은 새로운 윤리 규정이 한국의 영업 환경과 사회 규범을 무시한 규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다국적 제약사 영업사원은 “병의원, 약국을 처음 방문할 때 유대감 형성을 위해 사용되던 기념품이 금지되면 앞으로 맨손으로 영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기념품을 없애면 다른 방식의 영업 수단이 또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촉물, 기념품 제작에 쓰이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반기는 측도 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수많은 제약사가 몰리는 학회에서는 튀는 판촉물로 차별화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며 “기념품 제작이 금지된다면 오히려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hankyung.com/health/article?aid=2018082272531>

### 4. 유엔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위한 'STS&P 전시회' 개최

국제연합(UN) 등 국제협력기구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이나 기술, 교육프로그램, 각종 서비스 등을 선보이는 기회가 마련된다.

STS&P 2018 조직위원회는 '2018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 전시회·콘퍼런스(STS & P 2018)'를 오는 11월 28~30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UN과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STS&P 2018 조직위원회와 유엔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UN 등 국제협력기구와 각국 정부, 민간기업 등이 손을 맞잡고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문제, 경제·사회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세계 각국의 균형 잡힌 발전과 공존을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UNOPS는 UN 등 국제협력기구들이 SDGs 달성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추진하는 평화재건 및 구호·개발사업의 물품조달 및 공급체계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UNOPS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 교육프로그램, 각종 서비스 등이 UN 등 국제협력기구의 조달시장과 공적개발원조(ODA)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99868?cloc=rss|news|total\\_list](https://news.joins.com/article/22899868?cloc=rss|news|total_list)

## 윤리경영 실천 사례

### [마쓰시타전기] 신행동기준

#### 1. 기업 소개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1918년에 전기소켓을 만드는 오사카 전등이라는 회사에서 독립하여 마쓰시타 전기기구 제작소를 창업하기 시작하였다. 마쓰시타는 포탄형의 자전거 램프를 고안해 '내셔널 램프' 라고 만들어 히트를 친다. 이후 1932년에 마쓰시타 전기산업으로 개명되었고, 당시 마쓰시타 전공, 마쓰시타 통신공업 등 마쓰시타라는 이름이 붙은 14개의 대기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계 40개국에 진출해 내셔널(National), 파나소닉(Panasonic), 테크닉스(Technics) 등의 유명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을 팔았다.

그룹의 규모가 이리 크다보니 일본 내 가전제품 시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기업으로 손꼽혔다. 비디오테이프 규격을 놓고 VHS와 베타가 격돌할 때 다들 마쓰시타가 어떻게 나서느냐에 따라서 판정이 났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주로 나쇼날 브랜드로 판매하고 국내향 오디오 일부 제품과 해외 수출용 제품은 파나소닉, 오디오 한정으로 테크닉스 브랜드를 사용했다. 한국에서는 80년대 이전에는 나쇼날 브랜드가 널리 알려졌고 90년대 이후에는 파나소닉 브랜드가 더 많이 알려졌다.

2008년 9월 30일까지는 기업 명칭이 마쓰시타 전기산업 주식회사였다. 마쓰시타 전기산업 주식회사는 과거에 마쓰시타라는 이름 대신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내셔널, 파나소닉, 테크닉스다.

#### 2. '행동기준' 책정·개정의 배경과 목표

1918년에 마쓰시타 전기기구 제작소로서 시작하여 1929년에 경영의 기본방침인 '강령 및 신조' 를, 또한 1932년에 제1회 창업 기념 식전을 행하고, 사업의 사명을 선언, 1933년에 '마쓰시타전기의 준수해야 할 정신' 을 책정하고 있다.

당시 책정된 '마쓰시타전기의 준수해야 할 정신' 은 '산업보국의 정신, 공명정대의 정신, 화친 일치의 정신' 등으로 현대에도 계승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이념이나 정신을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원의 행동지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마쓰시타 전기는 1992년에 '행동기준'을 책정한 바 있는데, 이후 기업경영을 둘러싼 내외의 환경 또한 크게 변화함에 따라 1992년의 '행동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1998년 1월 '신행동기준'을 다시 책정하였다.

#### 3. 신행동기준의 포인트와 특징

##### 적용범위

관계회사를 포함한 약 12만명의 모든 임원, 사원을 대상으로 하고, 적용대상의 '사원'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사원과 고용계약기간 1년의 종업원으로 하고 있다.

##### 주요 포인트

① 사업활동의 추진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본업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1차 사업 활동의 추진'을 선두에 고정시키는 것이 먼저 제1의 포인트이다.

② '해서는 되지 않는 점보다 목표로 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윤리규정 및 행동지침은 'OO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조문의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동사에서는 단순한 '금지의 강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존 것을 그만두기로 하고, 이러한 행동을 목표로한다'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③ 실행 가능한 목표를 결정하였다.

이 때에도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토록 한 것도 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 윤리경영 실천 사례

④ 알기 쉬운 표현으로 노력하였다.

1992년 책정된 행동기준은 과장 이상을 대상으로 배포하는데 그쳤지만 이번은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준수해야 할 정신’ 등은 문어적이기 때문에, ‘신행동기준은 신입사원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노력한다’고 하였다.

⑤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책정하였다.

해외의 기업에도 통용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단, 기준을 책정하는데 있어 지역 및 국가에 의한 법률이나 문화 등 여러 가지 사정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존중하여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운용 상황

2002년 1월부터 본사를 비롯 관계회사 등에 이미 책자 배포를 마쳤고, 책자의 안표지에 성명란을 만들어 ‘자신의 책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개인의 귀속물로서 항상 옆에 두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신입사원의 연수와 관리직의 신입 연수 과정 중 일부에 행동기준의 이해를 깊게 하는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다른 회사에게는 “다양한 회사의 윤리강령 등을 연구했지만 자사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위키백과, ‘파나소닉’

한국경영자총협회, “勞使相生을 위한 투명·윤리경영”

구분	항목
제1장 사업활동의 추진	1. 연구개발 2. 조달 3. 생산 4. 영업 5. 홍보 6. 상품의 안전 7. 정보의 관리 8. 법령과 기업윤리의 준수
제2장 우리와 사회와의 관계	1. 지구환경과의 공존 2. 정보개시와 홍보·청문 3. 사회문화 활동
제3장 회사와 사원과의 관계	1. 인간성과 개성의 존중 2. 인권존중, 차별 취급의 금지 3. 프라이버시의 존중 4. 사람을 담당하는 사람의 존중 5. 적극적인 정보의 전달
보칙	○ 행동기준을 확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임직원은 부단한 노력을 거듭한다. ○ 사원이 고의 또는 중요한 과실에 따라 이 기준에 위반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 임원에 관해서는 상법 등에 의거, 조치한다.

<신행동기준의 구체적인 항목>



## 청렴 위반 사례

### 1 배우자의 회사에 최고점 부여 후 공사업체 선정

모 지방청 A과장은 공공물 시설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9개 업체가 응찰, 그 중에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B업체도 포함되었음. 이를 인지하면서도 A과장은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업체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여 배우자의 회사에 최고점을 부여하였고, 결국 B업체가 선정됨

시사점 :

- ① A공무원이 채용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임의로 개정하고, 별도의 공고도 없이 1인면접으로 채용하는 것은 배우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이해관계 직무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서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 2 외부 장소에서 계약체결 직전 직무관련자와 비공개 면담

모 중앙행정기관 계약담당 공무원 A는 소속기관 행사와 관련하여 기념품을 납품하기로 한 B업체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 인근 커피숍 에서 만나 면담을 함

시사점 :

- ① 공무원은 물품 구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직무관련 외부인과 면담시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민원인)에서 공개된 만남을 가져야 하므로, 외부 커피숍에서 직무관련자를 만나 면담을 한 공무원 A의 행위는 행동강령 제5조의2(업체 임직원 등 면담) 위반임

## 지식마당

###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

#### 1. 개요

2010년 영국은 OECD의 권고로 뇌물수수법을 제정하여 반부패에 관한 세계적 흐름을 강화시켰다. 영국뇌물수수법(UK Bribery Act)은 현재 선진경제권 부패 관련 입법 중 가장 엄격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에게 컴플라이언스제도 등 기존 뇌물방지절차의 지속적인 재점검이 더욱 중요해졌다.

뇌물수수법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개인 행동에 대해 회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있다. 또한, 뇌물수수법에 의하면 뇌물 규모와 목적의 차이를 구분하여 보지 않으며 뇌물제공자와 뇌물수수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1977)과 비교하였을 때, 해외부패방지법은 뇌물제공자만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각 회사에게 뇌물제공자의 행동을 방지함이 아닌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을 시 묵언함의 책임을 묻는다.

영국 뇌물수수법은 각 기업이 뇌물방지절차를 잘 갖췄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 뇌물방지절차 6대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첫번째 원칙은 Proportionality 로 기업의 부패 방지 절차가 기업특성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두번째는 Top-level commitment 로 반부패 청렴 의지는 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세번째는 Risk assessment 로 기업은 꾸준히 내외로 잠재적 뇌물 및 부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라고 한다. 네번째는 Due diligence로 파트너나 에이전트 등의 기업과 함께 일하는 제3자에 대한 실사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다섯번째는 Communication으로 내외부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함께 부패방지를 실천할 수 있게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Monitoring and review로 부패방지정책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서로 모니터링 및 감독할 것을 설명한다.

기업 뇌물방지절차 6대 원칙 관련 상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영국뇌물방지법(2010) 번역서를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더 쉬운 설명으로 위해 아래 6대 원칙을 정리한 표도 참고할 수 있다.

<영국 정부의 기업 뇌물방지절차 6대 원칙>

[1] 위험도에 비례하는 절차	당면한 뇌물위험 및 사업활동 속성, 규모, 복잡성 등에 비례하는 부패 방지 절차의 수립 및 운용
[2] 최고경영진의 결단·실천	이사회, 기업 소유주 등의 뇌물 불허 및 예방 의지
[3] 위험도 평가	내·외부의 잠재적 뇌물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 속성과 범위 평가(정기적인 위험 진단 및 부패방지 노력 기록)
[4]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제 3자 대리인에 대한 실사
[5] 의사소통(훈련 포함)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한 회사의 부패방지정책 공지
[6] 감독과 심사	관련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 실시

\* 참고자료: 권익위 발간 영국뇌물방지법(2010) 번역서

## 지식마당

### 2. 영국 뇌물수수법 처벌 사례

수립된지 7년이 지났지만 영국 뇌물수수법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된 사례가 이미 여러 번 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weett Group PLC.이다.

영국 뇌물수수법이 수립된 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가 Sweett Group 사건이다. 2012년 Sweett Group의 자회사인 Cyril Sweett International Limited(CI)는 Al Ain Ahlia 보험회사(AAAI)와 아부다비에 있는 로타나 호텔 건설 관련해서 계약을 한다. Sweett은 AAAI와의 계약 연장을 위해 AAAI의 부회장 외 임원에게 뇌물을 주게 된다. 이 사건은 Sweett이 뇌물을 제공한 금액을 뒤늦게 보고하면서 영국의 Serious Fraud Office(SFO)의 의심을 사며 시작된다.

결국 Sweett Group은 영국 뇌물수수법 제7조항을 어기고 뇌물 및 방지 절차를 수립하지 않아 Sweett의 거의 18%의 시가총액인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했다.

두번째 사례는 제일 최근 사건으로 Skansen Interiors Ltd. (SIL)에서 새로 임명된 CEO가 협력 중이던 DTZ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뇌물을 주고 숨기려 했던 일이다. 이 사건은 뇌물을 주고받은 것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뇌물방지 시스템 및 절차가 없거나 부실하여 처벌대상으로 지명되었다.

Skansen은 다른 뇌물수수법에 의해 처벌 받은 기업들과 달리 규모가 작고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중소기업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뇌물수수법은 사업을 국제적인 규모로 다루는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위 두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2가지가 있다.

#### 1. "Adequate Procedure"

Sweett group 과 Skansen 에겐 뇌물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Skansen은 뇌물거래 후, 법에 걸리지 않게 뇌물방지절차를 뒤늦게 수립하였으나, 범죄 당시에 절차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뇌물수수법 제7조(영리단체 뇌물예방 실패)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처벌 이유가 뇌물방지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 각 회사에 뇌물 및 다른 범죄 행위를 방지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 2. "Self-Reporting"

두 사건 모두 발각된 계기가 특별거래 및 고액거래 보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Sweett Group같은 경우는 보고가 너무 늦어져 SFO가 의심하면서 재조사를 하게 된다. 굳이 늦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각 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수상한 점이 보이면 재조사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위 사건들에서 Self-Reporting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Travers Smith, "UK Anti-Bribery Newsletter - Spring 2017"

PwC Legal, "UK Bribery Act's 'adequate procedures' - guidance for SMEs"

Pinsent Masons, "Jailing of directors for Bribery Act offences a warning to firms"

Burges Salmon, Fraud White Collar Crime(2016), "Sweett victory: Lessons learned from Sweett Group's Bribery Act conviction"



## Quiz

1. 다음 중 2010년 영국이 OECD의 권고로 제정하여 반부패에 관한 세계적 흐름을 강화시켰고, 현재 선진경제권 부패 관련 입법 중 가장 엄격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OECD 뇌물방지협약
  - ② 해외부패방지법
  - ③ 뇌물수수법
  - ④ UN 반부패협약
  
2. 다음 중 영국 정부의 기업 뇌물방지절차 6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규제와 제한
  - ② 위험도 평가
  - ③ 상당한 주의
  - ④ 위험도에 비례하는 절차
  
3. 다음 중 6대 원칙과 그 내용의 연결이 알맞은 것은?
  - ① 위험도에 비례하는 절차: 당면한 뇌물위험 및 사업활동 속성, 규모, 복잡성 등에 비례하는 부패 방지 절차의 수립 및 운용
  - ② 위험도 평가: 내·외부의 잠재적 뇌물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 속성과 범위 평가 (정기적인 위험 진단 및 부패방지 노력 기록)
  - ③ 감독과 심사: 관련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 실시
  - ④ 상당한 주의: 이사회, 기업 소유주 등의 뇌물 불허 및 예방 의지
  
4. 다음 중 영국 뇌물수수법이 수립된 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로 알맞은 것은?
 

① Enron Scandle	② Sweett Group
③ Samsung	④ Apple

##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③ 뇌물수수법
2. 답 ① 규제와 제한
3. 답 ③ 감독과 심사: 관련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 실시
4. 답 ② Sweett Group

## 관련 행사

### 1. The 7th World Sustainability Forum



지속가능성의 지향에 있어 대두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 및 긴급한 사항 탐색

주최 : UIBE, Tsinghua Univ

일시 : 2018년 9월 19일 ~ 9월 21일

장소 : Beijing, China

Preliminary Conference Topics

- CSR: Corporate Sustainable Responsibility
- GSF: Green/Sustainable Finance
- MST: Mobility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 PISD: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SA: Sustainable Agriculture (e.g. Food Security)
- SCA: Sustainable Cities and Architecture (e.g. Urbanization, Building Materials)
- SDG: 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ITD: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t'l Trade and Development
- SE: Sustainable Energy (e.g. Climate Change, Mining)
- SEE: Sustainability in Emerging Economies (e.g. China, India)

##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PC: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W: Water

<https://sciforum.net/conference/wsf-7>

### 2. World Ethical Data Forum 2018



정보와 데이터 사용의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윤리적, 실무적 문제 및 해결방안 논의

주최 : WDF

일시 : 2018년 9월 19일 ~ 9월 20일

장소 : Barcelona, Spain

Topics

- ✓ Innovation in Blockchain
- ✓ The crypto-economy
- ✓ ICO formation
- ✓ Mass data
- ✓ Artificial intelligence
- ✓ Encryption and privacy technologies
- ✓ GDPR
- ✓ Media freedoms
- ✓ Machinations of government

<https://www.worlddataforum.com/>